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⁵ A61L 15/10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특1994-0021080 1994년 10월 17일
(21) 출원번호	특1994-0004170	
(22) 출원일자	1994년 03월 04일	
(30) 우선권주장	8/026,883 1993년 03월 05일 미국(US)	
(71) 출원인	존슨 앤드 존슨 컨슈머 프로덕츠, 인코포레이티드 앤드리어 엘. 콜비 미합중국 뉴저지 08558 스킬맨 그랜드뷰 로드	
(72) 발명자	마이클 새먼	
(74) 대리인	영국 햄프셔 피 0175이엘 페어햄 더 워터스 편틀리 37 이병호, 최달용	

심사청구 : 없음

(54) 피부 플레징, 보습 및 기저귀 홍진 예방에 유용한 화장 어플리케이션

요약

본 발명은 기저귀 홍진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 퇴치에 유용한 저점도 항균성 유제를 함유하는 클렌징 직물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것이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피부 클렌징, 보습 및 기저귀 홍진 예방에 유용한 화장 어플리케이션

본 내용은 요구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기저귀 홍진의 원인으로 밝혀진 미생물에 대해 항균활성을 나타내기에 유효한 양의 하나 이상의 항균제를 함유하는 수중유 유제로 함침시킨 다공성 또는 흡수성 시트를 포함하는 화장 어플리케이션(cosmetic applicator).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유제가 지용성 클렌징제와 수용성 클렌징제 모두를 함유하는 화장 어플리케이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지용성 클렌징제가 액체 탄화수소, 파라핀 유도체 및 이들의 혼합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화장 어플리케이션.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유제가 지용성 클렌징제와 수용성 클렌징제를 약 0.5 내지 약 20중량의 양으로 포함하는 화장 어플리케이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클렌징제가 약 1 내지 약 10%의 양으로 존재하는 화장 어플리케이션.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수용성 클렌징제가 비이온성, 양쪽성 및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화장 어플리케이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유제가 계면활성제를 약 0.5 내지 약 10중량의 양으로 포함하는 화장 어플리케이션.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유제가 계면활성제를 약 1 내지 약 5중량의 양으로 포함하는 화장 어플리케이션.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유제가 하나 이상의 지용성 보습제를 약 0.5 내지 약 15%의 양으로 추가로 포함하는 화장 어플리케이션터.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지용성 보습제가 약 1 내지 약 8%의 양으로 존재하는 화장 어플리케이션터.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유제가 하나 이상의 수용성 연화제 또는 습윤제를 약 0.1 내지 8%의 양으로 추가로 포함하는 화장 어플리케이션터.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유제가 수용성 연화제 또는 습윤제를 약 1 내지 약 5%의 양으로 포함하는 화장 어플리케이션터.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유제가 향료와 하나 이상의 보존제를 추가로 포함하는 화장 어플리케이션터.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다공성 시트가 부직포, 직포 또는 발포체인 화장 어플리케이션터.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유제의 점도가 약 200cPs 이하인 화장 어플리케이션터.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유제의 점도가 약 20cPs 이하인 화장 어플리케이션터.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